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
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1개의 시·도에 2개의 시·도경찰청을 두는 경우, 시·도지사 소속으로 2개의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990호, 2021. 3. 30. 공포, 2021. 7. 1. 시행)됨에 따라,

경기도에 2개의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정원을 48명에서 51명으로 상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

대통령령 제 호

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
규정 일부개정령안

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총정원표
(제2조제1항 관련)

총계	51
경찰공무원 계	51
총경 이하	51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69